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04호
----------	-------

2019. 9. 19.

건명	유전자변형농산물(GMO)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제정 조례안(행정자치위원회)		
제안 및 제출자	차경선 의원 외 7명	제안연월일	2019. 9. 10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9. 11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논산시내의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사항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-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,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~제5조)
- 급식소에 대한 지원,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~제7조)
- 업무협조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9조)

### □ 검토의견

-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2조,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」 제19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